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태조사 대상 확대 등〉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659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0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0.

(3) 회 부 일 : 2026. 3.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음.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거부시 제재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함으로써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64조, 제87조의2,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u>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 ----- <u>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을 위반하여</u> ----- ----- ----- ----- ----- <u>법원의 판결로써 위법이 확정된 경우</u> ----- ----- ----- <u>실태조사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써</u>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제61조, 제6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 제89조제4호를 준용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u>기피 또는 방해</u>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 9. (생략) 제87조의2(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략) 2. <u>제12조제2항</u>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거부·방해 또는 기피</u>----- ----- 4. ~ 9.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u>제4조제2항, 제12조제2항</u> ----- ----- ----- ----- ----- ----- -----. -----.

현행	개정안
3. ~ 5. (생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u>)	3. ~ 5.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제33조의3</u> <u>에 따른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에 관한 실태조사</u> <u>에 한정한다-</u>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 제33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제33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제4조제2항),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제33조제8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음(제33조제10항).¹⁾

1)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불법개설 의료기관 유형 >

실개설자	불법개설 유형	의료법 조문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 하여 개설한 경우 포함)	제33조제2항 위반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개설자격 보유자 (의료인)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의료인 명의를 빌려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 위반)	제33조제8항 위반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	제4조제2항 위반

-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²⁾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 >

현행법상 제재 규정	제재 대상 위반사항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의료업 정지(1년 범위),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 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 - 제33조제10항을 위반한 때
제87조(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
제87조의2(벌칙)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3조제8항·제10항을 위반한 자

□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대한 행정조사는 제61조 및 제61조의2³⁾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등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의 관련 서류 검사, 관계인 진술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의3⁴⁾이 신설

3)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제33조제2항”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⁵⁾를 통해 3년 동안 공표하고 있음.

< 제33조의3 시행 이후 실태조사 실시 현황 >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행정조사	724	190	208	161	165

주: 제33조의3('21.6.30.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는 준비과정 등을 거쳐 '22.1월부터 실시

<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결정 현황 >

구분	전체		제33조 제2항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	
	기관수	결정금액	기관수	결정금액	기관수	결정금액	기관수	결정금액
계	170	312,053	132	261,019	37	49,335	1	333
2022	15	18,492	15	18,492	-	-	-	-
2023	34	58,144	32	56,357	2	421	-	-
2024	44	97,435	34	90,167	10	7,268	-	-
2025	77	137,982	51	96,003	25	41,646	1	333

자료: 보건복지부

- 이때,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에서는 실태조사를 현장조사, 문서 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조사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됨.⁶⁾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명단공표 >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표

6)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 시 「의료법」 제33조제2항 외에도 불법 개설과 관련 있는 같은 조 제8항, 제10항 및 동법 제4조제2항 위반 여부도 행정조사 명목으로 함께 확인하고 있음.

< 현행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 절차 >

구 분	업무 절차
1. 인지 및 신고	○ 의료기관 내부자 및 외부인의 신고 ○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인지
2.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 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등 기 조사 실시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중복조사 방지) - 현지조사 계획 유무 확인, - 환수결정 여부 확인
3. 사전자료 검토 및 준비	○ 행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분석 실시 - 요양기관 관련(변동사항, 인력, 시설 등) - 자격조회(사업장별, 일용근로소득 등) - 진료내역, 출입국내역 -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 요양급여 심사결정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
4. 계획수립 및 대상기관 확정	○ 건보공단에서 계획수립 후 복지부에 대상기관 확정 및 조사명령서 발부 요청
5. 행정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직원이 보건복지부 조사명령서에 따라 행정조사 실시(기관당 평균 4~5일 소요)
6. 행정조사 후속조치 결정	○ 행정조사 실시 후 후속조치 결정 - 수사의뢰 여부 결정
7. 수사의뢰	○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으로 판단시 관련 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8. 수사 및 결과 통보 (경찰)	○ 경찰이 사무장병원 혐의 수사(평균 11개월소요) ○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시 건보공단 및 지자체 통보 - 사무장 및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포함
9. 환수처분 및 징수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 징수금 환수결정 ○ 고지, 체납처분, 강제징수

자료: 보건복지부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위반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개정안은 현행법상 ① 제3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고, ②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만 있을 뿐 벌칙 규정이 없으며, ③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제33조제2항·제10항(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법인등이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⁷⁾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사거부의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33조의3제3항은 제61조, 제6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 제89조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61조 및 제61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포괄적인 보고 명령과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별도의 준용 조항 없이도 해당 조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89조제4호는 제재조항이므로 제33조의3에서 준용규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해당 조항에서 제재의 대상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7) 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은 법적 용어는 아니나,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주요 진료기술과 마케팅을 공유하는 의료기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보완·지원하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여러 의료기관에 제공(경영지원형)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 브랜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광고대행, 의료기기·의약품 독점공급,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등 각종 계약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여 수익의 대부분을 독점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8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둘째, 현행법 제33조의3에서는 “실태조사”를 이 조에 한정하여 약칭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89조제4호에서 “실태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의료법」 제33조의3 실태조사는 제33조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다른 불법개설 유형은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를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음.

2)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정수용)

-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기관 불법개설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무분별한 실태조사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 착수에 관한 기준 등 행정권 남용 방지 조항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권리보장을 위해 조사일정 조정, 이의제기와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3) 국민건강보험공단 (찬성)

- 「의료법」 상 실태조사는 제33조제2항 위반으로 한정되어 있어 의료인의 명의대여, 이중개설, 의료법인의 법인명의 대여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음. 또한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거부 시에

제33조 제2항 및 제10항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이 있어 의료인의 명의
대여, 이중개설에 대해 실태조사 거부 시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거부 시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경우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494